

KDB산업은행 2018년 3차 청년인턴 채용공고(안)

1. 채용예정인원 : 100명 내외

○ 직무·권역별 채용인원

직무	권역	근무점포	채용예정인원
일반	서울·수도권	- 본점 - 서울·수도권 소재 지점	62명
	영남	- 부산 소재 지점 - 대구 소재 지점 - 울산 소재 지점 - 창원 소재 지점 - 포항, 경주 - 구미, 경상 - 진주	6명
	충청·강원	- 대전 소재 지점 - 천안, 아산, 당진 - 청주, 오창 - 충주 - 춘천, 원주	5명
	호남	- 광주 소재 지점 - 목포 - 여수 - 전주, 군산	4명
기술		- 본점 기술관련 부서	3명
전산		- 본점 IT부서	20명
채용예정인원			100명 내외

* 지원 직무구분 및 지원 권역간 중복지원 불가하며, 최종제출 후 수정 불가

* 지원서 작성시 근무희망점포 선택

(실제 배치부점과 상이할 수 있으며, 별도 숙소 제공없음)

2. 직원구분 : 임시고용인력

3. 담당직무 : 은행업무 지원

4. 지원자격

- 연령 : 만 34세 이하 ('83. 12. 29자 이후 출생)
 - 군필자의 경우 「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」 등에 의거 아래 기준 적용
 - * 군복무기간 1년 미만: 1세, 1년 이상~2년 미만: 2세, 2년 이상: 3세 연장
- 학력 및 전공에 따른 응시자격 제한 없음
- 계약기간 중 전일 근무가능한 자 (근무기간 중 학업병행 불가)
- 산업은행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없는 자
- 산업은행 인사내규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

◆ 산업은행 인사내규상 결격사유

1.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4.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5. 징계 면직된 사실이 있는 자
6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상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7. 「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상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자

5. 우대대상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
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의한 장애인
- 저소득층 (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)
 - * 저소득층의 범위
 - 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』 제2조 제2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로서 본인 또는 대상가구의 구성원
 - 『한부모가족지원법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

6. 주요 근무조건 및 보수

- 계약기간 : 2018. 12. 28 ~ 2019. 4. 12 예정 (총 16주)
- 근무시간 : 주 40시간, 1일 8시간 근무 (09:00 ~ 18:00)
- 보수수준 : 월 190만원 (4대 보험 및 세금 포함)
- 근무지 : 본점 및 국내지점
- 휴 가 : 취업활동 지원 등을 위한 소정의 휴가 부여
- 수료증 발급대상 : 3개월 이상 근무하고 평가결과 '보통'이상인 우수 인턴
- 경력증명서 발급대상 : 30일 이상 근무한 인턴
- ※ 신입행원 채용시 산업은행 청년인턴 근무경험자 우대

7. 채용절차 및 단계별 선발예정인원 등

구분	내용
서류심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채용예정인원의 2.5배수 내외 선발 • 지원동기, 금융권(지원분야) 역량개발노력 등 입학지원서 평가
면접전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직무능력면접, 심층토론면접 • 직업성격검사(인성검사)
기 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019년 청년인턴 채용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대하여 가산점 부여 예정

8. 채용일정

응시원서 접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접수기간 : 2018.11.1(목) ~ 11. 15(목) 18:00 • 접수방법 : 인터넷 접수 (방문, 우편, e-mail접수는 받지 않음) → 채용홈페이지(recruit.kdb.co.kr)에서 직접 입력
서류심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: 2018. 11월 4주차
면접전형 및 인성검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면접일자 및 장소 : 2018. 12월 1주차, 본점 • 구체적인 내용은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시 개별 통보 • 채용예정자 발표 : 2018. 12. 7(금) 예정
건강검진 및 신원조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세부일정 및 방법은 채용예정자 발표시 개별 통보
입 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018. 12. 28(금) 입학 예정

9. 각 채용단계별 합격자 발표 및 일정변경 등의 안내사항

- 채용홈페이지(recruit.kdb.co.kr)를 통해서 공고
 - 합격 여부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는 바, 지원자 본인이 채용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

10. 제출서류

□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이전 온라인 제출(본인확인용)

- 증명사진, 생월일(4자리)
 - ▶ 제출방법 :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시 채용홈페이지에서 사진파일 등 등록
 - ▶ 증명사진, 생월일(4자리) 미제출시 면접참가 불가

□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 제출

-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원본 1부 (해당자에 한함)
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의한 장애인증명서 1부 (해당자에 한함)
- 저소득층 증빙서류 (해당자에 한함)
 - ▶ 기초생활수급자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
 - ▶ 차상위계층 : 차상위계층 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
 - ▶ 한부모가족 : 한부모가족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

□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예비소집시 제출

-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및 졸업(예정)증명서 원본 각 1부
 - ▶ 재학(휴학)생의 경우, 졸업(예정)증명서 대신 재학(휴학)증명서를 제출
 - ▶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는 대학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를 함께 제출
- 주민등록초본(병역내역 포함) 또는 전역예정증명서 1부 (해당자에 한함)
- 신원조사 관련 서류 (합격자앞 별도통보)

11. 기 타

- 은행의 사정에 따라 상기 전형절차와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음
- 건강검진 및 신원조사 결과 채용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합격이 취소됨
- 지원서의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(채용)이 취소됨
-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이내 반환 청구 가능함
- 별첨1의 양식(채용서류 반환청구서)을 작성하여 recruit@kdb.co.kr 앞 신청
-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규모를 축소할 수 있음
- 입학포기 등에 따른 결원 발생시 차순위 예비합격자로 충원할 수 있음
- 지원서류의 기재착오 및 누락,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
- 채용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(채용)이 취소됨은 물론 향후 5년간 응시가 제한됨
-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도 합격(채용)이 취소됨
-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 홈페이지(recruit.kdb.co.kr)의 “온라인 채용 문의 → 채용Q&A” 활용

(우)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4

【 KDB산업은행 인사부 채용담당자 ☎ 02-787-6308, 6309, 6335 】

-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3호서식]

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
청구인	성명	접수번호
주소		
반환장소 (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)		
반환청구서류		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

(서명 또는 인)

한국산업은행 귀하

공지사항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